

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				
제15조(성적산출) ① ~ ② <생략> ③ 성적평가의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 <table><tr><td>등급</td><td>A등급 이상</td><td>B등급이상 (A+B)</td><td>C등급이하 (C+D+F)</td></tr><tr><td>구성비</td><td>30%이하</td><td>70%이하</td><td>30%이상</td></tr></table>	등급	A등급 이상	B등급이상 (A+B)	C등급이하 (C+D+F)	구성비	30%이하	70%이하	30%이상	제15조(성적산출) ① ~ ② <생략> ③ ----- ----- -----. <table><tr><td>등급</td><td>A등급 이상</td><td>B등급 이하 (B+C+D+F)</td></tr><tr><td>구성비</td><td>30%</td><td>70%</td></tr></table>	등급	A등급 이상	B등급 이하 (B+C+D+F)	구성비	30%	70%	•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 조정
등급	A등급 이상	B등급이상 (A+B)	C등급이하 (C+D+F)													
구성비	30%이하	70%이하	30%이상													
등급	A등급 이상	B등급 이하 (B+C+D+F)														
구성비	30%	70%														
④ ~ ⑥ <생략> 제36조(복학생의 납입금)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을 필한 후 <u>중간시험</u> 이전에 휴학한 학생은 납입금 없이 복학 할 수 있다.	④ ~ ⑥ <생략> 제36조(복학생의 납입금) ----- ----- ----- 수업일수 1/4 이내에 ----- -----.	•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기한 정정														